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’ 중 실효성이 낮은 항목인 ‘신원이상’을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인 ‘건강이상’과 ‘상이처재발’을 건강이상으로 통합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0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												
제 건	적·강	사·이	망·상	[]	인 수·합	병 []	자	영	[]	근무조건 불만 무 단 결 근 근무태만(불성실) 부 정 행 위 범 죄 행 위 그 밖의 사유		
정 년	퇴 직	[]	고용조정(정리해고)	[]	퇴 직	금 수	령	[]				
의 원	면 직	[]	임금체불(3개월 이상)	[]	능 령	개 발·교 육	[]					
명 예	퇴 직	[]	용 역	전 환	[]	가 구	원 간	병 []				
기 간	만 료	[]	거 주	이 전	[]	저 임	금	[]				
휴 업·폐 업	[]	회 사	이 전	[]	능 령	부 족	[]					
			전	직	[]	적 성	부 적	합 []		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